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22
----------	-------

발의연월일 : 2026. 8. 10.

발 의 자 : 김성원 · 이현승 · 김은혜
김선교 · 송석준 · 고동진
유용원 · 배현진 · 김종양
김용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지정 및 전면 개발 사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 거점을 특구로 편입·확장하여 사업 속도와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지자체는 부적합한 실정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에 실질적인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고, ‘접경지역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시설들의 입지가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실용적 특구 설계가 필요함.

이에 이미 우수한 거점 인프라가 확보된 지역을 특구로 편입·확장하는 ‘경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등 신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전부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특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허가·인가 등을 받아(허가·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에 착수한 자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국립수목원조성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변경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① 평화경제특별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이 수립·변경되어 평화경제 특별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변경·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2.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이 경우 제19조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국립수목원조성 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5.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전부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특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허가·인가 등을 받아(허가·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에 착수한 자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u>
제12조(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결정·수립·확정·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 11. (생략) <u><신 설></u>	제12조(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 ----- ----- ----- ----- -----. 1. ~ 11. (현행과 같음) <u>1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국립수목원조성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수</u>

<신 설>

<신 설>

목원조성계획의 수립·변경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3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개

발계획의 변경) ① 평화경제특

별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이 수립·변경되어 평화경

제 특별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평화경제특별구

역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변경·승인

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

에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

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통일부

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

조의2까지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

2.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

른 관광개발기본계획

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이 경우 제19조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국립수목원조성 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수목원 조성계획

5.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